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목 차>

1. 장애인방송 편성의무가 발생하는 방미통위 고시대상
사업자 기준 변경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장애인방송 편성의무가 발생하는 방미통위 고시대상 사업자 기준 변경		
	2.규제조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제 5조		
	3.위임법령	방송법 제 69조		
	4.유형	신설	5.행정예고	'26.4.15.-5.1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방송매출액과 장애인방송물 제작비가 연동'된 현재 기준을 '방송매출액'으로 일원화 - 현재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비중 1% 이하 기준에 따르면, 본방비율이 적을수록(재방송비율 ↑) 의무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순 발생 < 고시의무사업자(SO·PP) 지정기준 > ① 전년도 송출실적이 있는 사업자 ② 장애인방송 제작비* 비중이 1% 이하인 사업자 *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단가 × 장애인방송 편성시간 ☞ 장애인방송 편성시간 = 연간방송시간 × 본방비율 × 장애인방송 목표비율 ③ 전년도 연평균 시청점유율 0.2% 이상 채널 운영 사업자 (PP에 한함) ※ SO: 지정기준 ①·② 적용, PP: 지정기준 ①·②·③ 적용 - '12년부터 적용된 '장애인방송 제작비 비중 1% 이하' 기준은 현재 미디어 환경에 적용하기에 다소 부적합하여 개선 필요하며, - 장애인방송 제작비 산정에 필요한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단가'는 추정치로, 방송사가 의무대상 지정여부를 스스로 예측하기에 어려움		

		PP의 경우 ‘전년도 연평균 0.2% 이상’→ ‘최근 3년 평균 0.3%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장애인 시청자의 인기 채널 접근권 제고 ⇒ 지정기준 개정으로 장애인은 더 많은 본방송(신규 콘텐츠)와 시청점유율이 높은 인기 방송을 시청하고, 방송사는 규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안정적 장애인방송 제공 및 품질제고 가능												
	7.규제내용	장애인방송 편성의무가 발생하는 고시대상 사업자 기준 변경(제5조) (지정기준 일원화) ‘최근 3년 평균 방송매출액 150억 원 이상인 사업자’로 일원화 (시청점유율 완화) ‘최근 3년 평균 시청점유율 0.3%’로 완화 ※ 개정기준 적용 시물레이션 결과, PP의 경우 사업자 수가 현재와 유사하며, SO의 경우 다소 증가하나 법인 기준으로 2개만 증가하지만, 방송매출액에 따라 대상 사업자의 감소 가능성이 있음 * SK브로드밴드 계열(23개 사업자), HCN 계열(8개 사업자) - 현재 기준 : SO(9개 법인, 44개 사업자), PP(11개 법인, 37개 사업자) - 개정 기준 : SO(11개 법인, 75개 사업자), PP(14개 법인, 34개 사업자)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방송사 및 시각·청각장애인을 포함한 전체장애인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td><td>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SO: 11개 법인 / PP : 14개법인)</td></tr><tr><td>이해관계자</td><td>시각 청각장애인</td><td>695,218명(복지부 발표)</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SO: 11개 법인 / PP : 14개법인)	이해관계자	시각 청각장애인	695,218명(복지부 발표)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SO: 11개 법인 / PP : 14개법인)												
이해관계자	시각 청각장애인	695,218명(복지부 발표)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고시의무사업자 지정기준을 합리화하여 사업자의 규제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장애인에게는 더 많은 양질의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개정 5조의 분석 대상 기간 관련: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매 3년											

			(2026년 ~ 2028년)마다 지정·공표되며, 실적 점검은 매년 1년단위로 실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6년은 현재 고시(개정전 기준)를 적용하여 의무사업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방송을 제공하고 있음. 개정 고시에 따른 장애인방송 제공은 지정기간 3년의 잔여기간 2년, 2027년~2028년에 적용 예정. 즉, 개정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5조의 적용은 2027년 ~2028년 2년 동안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명시함(2026년은 현재 고시를 기준으로 장애인방송을 제공함이 따라 비용은 0으로 산정)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 지정·공표 주기(2020년 1월 1일부터 매 3년)와 고시 개정 주기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재검토형	제17조	연장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재검토형	20260101~20281231	3	
	13.우선허용·사후 규제	해당 없음			

	적용여부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2,473.7	2,047.35	148.41
	15.규제정비 계획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5조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의 구분) ①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는 필수지정사업자와 <u>고시의무사업자</u> 로 구분한다. ② (생략) 1 ~ 3. (생략) ③ <u>고시의무사업자</u> 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중에서 법인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매 3년마다 지정·공표하되, 방송환경 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한 제반 상황에 따라 매년 추가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로서 방송법 제70조에 따라 지역채널을 운용하는 사업자 2.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방송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얻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기산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5조(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의 구분) ①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는 필수지정사업자와 <u>고시지정사업자</u> 로 구분한다. ② (현재와 같음) 1 ~ 3. (현재와 같음) ③ <u>고시지정사업자</u> 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중에서 법인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매 3년마다 지정·공표하되, 방송환경 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한 제반 상황에 따라 매년 추가할 수 있다. 1. (현재와 같음) 2. (현재와 같음) 3. (현재와 같음) 4. (현재와 같음)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기산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전년도 송출실적이 있는

현 행	개 정 안
사업자 중 <u>고시의무사업자</u>를 지정 · 공표해야 한다. 1. 전년도 송출실적이 있는 사업자 2. 방송매출액에서 장애인방송물 제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 3. <신설> ⑤ 제3항제1호의 종합유선방송사를 <u>고시의무사업자</u>로 지정할 때, 당해 종합유선방송사가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자로 간주한다. ⑥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를 <u>고시의무사업자</u>로 지정할 경우 전년도 연평균 시청점유율 0.2% 이상인 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다만, 여러 개의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는 전년도 연평균 시청점유율 0.2% 이상인 채널에 한해 적용한다. ⑦ 제3항에 의해 <u>고시의무사업자</u>로 지정되었으나 등록취소 또는 휴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u>고시지정사업자</u>로 지정·공표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최근 3년 평균 방송매출액이 150억원 이상인 사업자(다만, 해당 종합유선방송사가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법인의 평균 방송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3.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최근 3년 평균 방송매출액이 150억원 이상인 사업자 ⑤ 제3항제1호의 종합유선방송사를 <u>고시지정사업자</u>로 지정할 때, 해당 종합유선방송사가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자로 간주한다. ⑥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를 <u>고시지정사업자</u>로 지정할 경우 최근 3년 평균 시청점유율 0.3% 이상인 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다만, 여러 개의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는 최근 3년 평균 시청점유율 0.3% 이상인 채널에 한해 적용한다. ⑦ 제3항에 의해 <u>고시지정사업자</u>로 지정되었으나 등록취소 또는 휴

현 행	개 정 안
업·폐업 등으로 방송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 매년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u>⑧ <신설></u>	업·폐업 등으로 방송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 매년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u>⑧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최근 3년 평균 실적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실적이 존재하는 연도의 평균으로 산정한다.</u>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 「방송법」 등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방송사는 폐쇄자막·화면해설·수어방송 등 장애인방송을 일정비율 이상 제작·편성하여야 함('11년 ~)

* 「방송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 >

구분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목표(%)		
		자막	화면해설	수어
① 필수지정사업자	지상파, 종편·보도PP	100	10(재방25%이하)	7
	위성	70	7	4
② 고시의무사업자	SO	70	7	4
	일반PP	70	5	3

- 방송을 포함한 미디어환경은 급변하는 반면,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 지정기준은 고시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현재 미디어 생태계를 반영하여 현실화 필요

< 고시의무사업자 지정기준(고시 제5조) >

- ① 전년도 송출실적이 있는 사업자
- ② 장애인방송 제작비* 비중($\frac{\text{장애인방송물 제작비}}{\text{방송사업매출액}}$)이 1% 이하인 사업자

*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단가 × 장애인방송 편성시간
 장애인방송 편성시간 = 연간방송시간 × 본방비율 × 장애인방송 목표비율

- ③ 전년도 연평균 시청점유율 0.2% 이상 채널 운영 사업자(PP에 한함)

※ SO ①·② 적용, PP ①·②·③ 적용

- 現고시의무사업자 지정 기준인 '방송매출액 대비 장애인방송물 제작비(본방비율 기준) 비중 1% 이하를 적용하면, 방송매출액이 적어도 재방송비중이 높을 경우(본방송 비중↓) 의무사업자로 지정되는 모순 발생

구분	본방비율	방송매출액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비중(1%이하)	지정 여부
A사	44.7%	64,057,438천원	897,577천원	1.4%	미지정
B사	15.4%	14,301,889천원	153,585천원	1.1%	미지정
C사	6.5%	7,011,332천원	64,825천원	0.9%	지정

※ 수용자인 장애인 측면에서도 재방송이 많은 채널보다 본방송이 많은 채널에서 장애인방송이 제공되면 시청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산정에 필요한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단가'는 추정치로써 방송사가 스스로 의무대상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움

〈 「장애인 방송 고시」 개정 주요 추진 경과 〉

- ' 23.9.~12월 : 장애인방송 고시의무 사업자 지정 제도개선 정책연구
- ' 24.10월 ~ ' 25.4월 : 장애인방송 고시 개정 연구반 구성* · 운영(총 6회)
 - * 법률, 학계, 방송사, 장애인단체 등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 ' 25.5월 : 「장애인방송 고시」 개정안 마련 및 법률 자문
- ' 25.9월 ~ : 국가인권위원회 사전협의,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 정부개입 필요성

- 「방송법」 제69조 등에 따른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은 시각·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미디어에 접근하고 향유하기 위한 기본적 제도로써
 - 변화하는 방송 시청환경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방송 제공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 노력이 요구되며
 -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 지정에 대한 합리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 장애인방송 제공 및 품질향상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장애인방송 편성의무가 발생하는 방미통위 고시 대상 사업자 기준 변경
	내용	- 고시의무사업자 기준을 '최근 3년 평균 방송매출액 150억 원 이상인 사업자'로 일원화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우, 지정 기준을 현재

		'전년도 연평균 시청점유율 0.2%'에서 '최근 3년 평균 시청점유율 0.3%'로 기준 완화
	사업자구분	개정 고시 기준
	SO	최근 3개년 평균 방송매출액 150억 원 이상
	PP	최근 3개년 평균 시청점유율 0.3% 이상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 방송사 규모와 영향력(매출액, 시청 점유율 등)에 비례한 방송의 공적·사회적 책임 부여 ○ 방송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장애인 방송 제공 의무를 부과하여 규제예측 가능성을 높여 정책 안정성 제고 ○ 본방송(신규 콘텐츠), 시청 점유율이 높은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기회 확대	○ 해당사항 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한국시각장애인 협회 등	- 일시 : ① 2024.11.6.(수), ② 2024.12.11.(수), ③ 2025.2.7.(금), ④ 2025.2.25.(화), ⑤ 2025.3.6.(목) ⑥ 2025.4.2.(수) ⑦ 2025.8.25.(월) ⑧ 2025.10.31.(금) - 장소 : 시청자미디어재단 회의실 등 - 방법 : 대면회의	○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 고시 지정 사업자 수가 감소 하지 않도록 검토 요청 -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는 시청자 주권 측면에서는 규제라고 보기 어려움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 논의를 통해 고시 의무사업자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 150억 원', PP의 경우 '3년 평균 시청 점유율 0.3%'로 완화
한국방송협회 등		○ 장애인방송 고시 의무사업자 지정기준 합리화 취지에 공감 - '12년부터 방송사가 장애인 방송 제공하고 있어 장애인 방송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임 - 의무사업자 수가 다소 증가 하는 것이 부담일 수 있으나, 제3비 지원 등을 통한 부담 완화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 사전협의 의견 :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기회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기준 변경의 취지에 공감, 변경에 있어 의무사업자의 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필요(25.11월)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현재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 지정기준은 방송매출액에서 '장애인방송 제작비*'가 차지하는 비중 1% 이하로 정하고 있음

〈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비 산정 기준 〉

장애인방송물 평균 제작비 = 장애인방송 편성시간¹⁾ × 장애인방송물 평균 제작단가²⁾

- 1) **장애인방송 편성시간** = 연간 방송시간 × 본방비율 ×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
 - ※ 연간 방송시간, 본방비율 : 방송산업실태조사(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결과 적용
 - ※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 : 장애인방송 고시에 지정된 편성비율 적용
 - ※ 재방송은 본방송에 비해 비용이 일부 또는 소요되지 않음에 따라 본방송만 고려
- 2) **장애인방송물 평균 제작단가** = 장애인방송 유형별(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제작비 총계 ÷ 장애인방송 유형별 편성시간 총계
 - ※ 직전 연도 제작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유형별 제작비(본방송) 총계
 - ※ 직전 연도 제작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유형별 편성시간(본방송) 총계

- '장애인방송 평균 제작비'는 본방송 기준으로 산출하여 본방비율이 낮은(재방송 비율 ↑) 방송사가 의무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 '장애인방송물 평균 제작단가'는 전체 방송사가 아닌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일부를 대상으로 산정한 추정치로 실제 시장 단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또한, 현재 산정기준은 복잡하고 이해가 어려워 방송사가 고시의무사업자 지정 여부를 예측하기에 곤란함
- 이에 따라, 「방송법」에 근거 매년 공표하는 '방송사 재산상황 공표집'의 방송매출액으로 기준을 단일화하여 산정기준의 객관성·정확성 확보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우, '전년도 연평균 시청점유율 0.2%'에서 '최근 3년 평균 시청점유율 0.3%'로 지정기준 완화하여, 장애인 시청자에게 시청점유율이 높은 방송의 시청 기회 제공
- 위 규제대안을 기준으로 최근 3년('22~'24년) 방송매출액과 시청점유율을 적용하여 모의산정한 결과

<연도별 의무사업자 현황 및 개정 기준 적용 결과>

구분	현재 기준								개정 기준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 25년	' 26~' 28년	' 26~' 28년
SO	84개	67개	60개	65개	65개	65개	43개	44개	75개
PP	16개	12개	12개	12개	11개	11개	10개	13개	14개
계	100개	79개	72개	77개	76개	76개	53개	57개	89개

⇒ 고시의무사업자 지정기준 개정으로 방송사는 규제예측 가능성을 높여 안정적 장애인방송 제공 및 품질제고 가능, 장애인은 더 많은 신규 콘텐츠(본방송) 및 시청점유율이 높은 프로그램을 시청 가능 (규제대안1)

<현재 고시의무사업자 기준>

①장애인방송 제작비중	②시청점유율 0.2%
SO	PP



<개정 고시의무사업자 기준>

방송매출액 150억원 이상	시청점유율 0.3%
SO	PP

- ① 방송매출액에서 장애인방송물 제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 이하인 사업자 → 최근 3년 평균 방송매출액이 150억원 이상인 사업자
- ② 전년도 연평균 시청점유율이 0.2% 이상인 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최근 3년 평균 시청점유율 0.3% 이상인 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

3. 규제목표

-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 지정기준을 합리화(고시 개정)하여 규제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각·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에게는 더 많은 양질의 방송시청 기회 제공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1) 규제 도입 목적 및 수단

- 동 규제는 관련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고시를 개정, 장애인방송을 제공해야 할 방송사의 기준을 합리화하여 장애인의 방송·미디어 복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장애인방송 고시 개정 주요내용 〉

- 장애인방송 편성 고시의무사업자 지정 기준(SO·PP 공통) : 방송매출액에서 장애인 방송 제작비* 비중 100분의 1 이하 → **최근 3년 평균 방송매출액 150억 원 이상**
 * 장애인방송 제작비 =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단가 × 장애인방송 편성시간**
 ** 장애인방송 편성시간 = 연간방송시간 × 본방비율 ×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목표비율
- 장애인방송 편성 고시의무사업자 지정 기준(PP) : 전년도 연평균 시청점유율 0.2% → **최근 3년 평균 시청점유율 0.3%**

(2) 비례적 타당성

- 비장애인과 동등한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 및 방송사의 규제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장애인방송 고시」 제5조 개정 추진
 - 현재 기준은 본방송은 적고(재방송 ↑) 방송사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복잡한 산식으로 규제 예측가능성이 낮음
 - 개정안은 사업자의 규모와 영향력(매출액, 시청점유율 등)에 비례하여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예측가능성을 높이고
 - 장애인의 실질적 방송접근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규제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제를 적용하도록 설계
- 개정을 위해 법률, 학계 등 전문가, 장애인단체 및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고, ‘장애인방송보장시청위원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기술적 사항의 규정, 시험·인증·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정보통신업 기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800억 원 이하) 중 현재 고시 기준에 따라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가 부과되었던 일부 사업자가 고시 개정안의 기준(최근 3년 평균 방송매출액 150억원 이상) 적용 시 의무가 해제되어 규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사항 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사항 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사항 없음
판단 근거	해당사항 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사항 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사항 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7조(규제의 재검토)에 따른 재검토 조항 유지(매 3년마다 타당성 검토)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해당없음	해당사항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해당없음	해당사항 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해당없음	해당사항 없음
사후 평가관리	해당없음	해당사항 없음
규제 샌드박스	해당없음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영국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에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 및 준수 명시 - Ofcom, 2008년 「텔레비전 액세스 코드」를 통해 자막·수어·화면해설 제공 의무화 2017년 「디지털경제법」에 따라 VOD사업자에게 자막·수어·화면해설 제공 의무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
미국	「텔레비전디코더회로법(1990)」에 따라 미국 내 판매되는 13인치 이상 텔레비전에 자막방송 수신장치 탑재 의무화 「21세기통신영상접근법(CVAA, 2012)」에 따라 실시간 방송의 자막·화면해설 및 인터넷을 통한 방송프로그램 제공 시 자막 의무화
일본	1997년 「방송법」 개정으로 자막·화면해설 제공 노력의무 부과 - 총무성, 2018년 「방송분야의 정보접근성 지침」을 통해 자막·화면해설 편성목표치 상향, 수어 편성목표치 신설 - 총무성 산하 정보통신연구기구(NICT), 자막·화면해설·수어 제작비 지원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	------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사항 없음
------	------	---------

○ 타법사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④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장애인방송 편성의무가 발생하는 방미통위 고시 대상 사업자 기준 변경>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426.34 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6	2026	3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장애인방송 편성의무가 발생하는 방미통위 고시 대상 사업자 기준 변경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2,473.7	2,047.35	426.34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2,473.7	2,047.35	426.35
기업순비용		426.34	연간균등순비용	148.41

III.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규제대안은 규제 대상인 방송사의 규제 예측가능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고시의무사업자 지정기준(SOPP 공통)을 방송매출액으로 단일화하여 준수 가능성이 높음
- 이해관계자와 사전협의 및 충분한 논의를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규제 수용성 제고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기존 인력 및 예산 활용이 가능하고, 규제집행을 위하여 추가적 인적·물적 자원의 소요가 불필요하므로 행정적 부담없이 집행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기존 인력 및 예산을 활용이 가능하고, 규제집행을 위하여 추가적인 인적·물적 자원의 소요는 불필요하므로 재정적 부담없이 집행가능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3.9 ~ 12월 : 장애인방송 고시의무 사업자 지정 제도개선 정책연구
- '24.11월 ~ '25.4월 : 장애인방송 고시개정 연구반 구성·운영
 - ※ 법률, 학계, 방송사, 장애인단체 등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
- '25.5월 : 장애인방송 고시 개정안 마련 및 법률 자문

○ '25.9월 ~ : 국가인권위원회 사전협의

※ 「방송법 시행령」 제52조

2. 향후 평가계획

- 장애인 대상 만족도 조사, 장애인방송 실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으로 규제의 적정성·실효성 등을 검토할 예정임

3. 규제 정비계획

- 「장애인방송 고시」 제17조(규제의 재검토)에 따라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규제조항의 개선 및 정비 검토 예정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5조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고시의무사업자) 지정 기준 개선	차기 규제 재검토 시기 도래 시

4. 종합결론

-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텔레비전 접근을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11년부터 방송사에 장애인방송 제공을 법적 의무로 부과하고 있음

※ 「방송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 '11년부터 적용된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 지정기준을 현재 미디어 환경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

- 이에 따라, 고시의무사업자(SOPP 공통) 지정기준을 현재 '방송매출액에서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비중 100분의 1 이하'→ '최근 3년 평균 방송 매출액 150억 원 이상'로 합리화하고

* 본방비율이 낮을 수록(재방송비율 ↑) 의무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순이 발생함에 따라, 방송매출액으로 기준 단일화

- PP의 경우, 방송매출액 기준 외에 현재 '전년도 연평균 시청점유율 0.2% 이상'에서 '최근 3년 평균 시청점유율 0.3% 이상'으로 완화 추진

○ 「장애인방송 고시」 제5조 고시의무사업자 지정기준 개정을 통해

- 방송사는 장애인방송 제공의무(규제) 부담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보다 안정적인 장애인방송 제공 및 품질제고 가능
- 시각·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은 더 많은 양질의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기회 확보

* 개정 5조 적용 시 연간균등순비용은 3억원 미만이며, 전체 시각·청각장애인 695,218명 ('24년 장애인등록 현황, '25.4. 복지부 발표)의 방송시청권 보장 및 정보접근 편익증진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6	3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장애인방송 편성의무가 발생하는 방미통위 고시 대상 사업자 기준 변경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2,473.7	2,047.35	426.34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2,473.7	2,047.35	426.35
기업순비용		426.34	연간균등순비용	148.41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개정 5조의 분석 대상 기간 관련: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매 3년(2026년 ~ 2028년)마다 지정·공표되며, 실적점검은 매년 1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6년은 현재 고시(개정전 기준)를 적용하여 의무사업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방송을 제공하고 있음. 개정 고시에 따른 장애인방송 제공은 지정기간 3년의 잔여기간 2년, 2027년~2028년에 적용 예정. 즉, 개정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5조의 적용은 2027년 ~2028년 2년 동안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명시함(2026년은 현재 고시를 기준으로 장애인방송을 제공함이 따라 비용은 0으로 산정)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 지정·공표 주기(2020년 1월 1일부터 매 3년)와 고시 개정 주기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장애인방송 편성의무가 발생하는 방미통위 고시 대상 사업자 기준 변경>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		
활동제 목	장애인방송 편성의무가 발생하는 방미통위 고시 대상 사업자 기준 변경으로 인한 장애인방송 제작비 증가		
비용항목	외부서비스		
비용	연도	비용	비용(현재가치)
	2026	0	0
	2027	1,320,950,946	1,264,067,891
	2028	1,320,950,946	1,209,634,345
	합계	2,641,901,892	2,473,702,236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연도	산식설명	산식
	2026	근거설명 참고	0
	2027	근거설명 참고	1320950946
	2028	근거설명 참고	1320950946
근거설명	◆ 개요 ○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 사업자는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로 구분되며, 개정 고시 제5조의 적용대상은 고시의무사업자인 종합유선 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임 – SO의 경우 연간 방송시간의 70% 폐쇄자막방송, 4% 한국수어방송, 7% 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정하고 있음 – PP의 경우 연간 방송시간의 70% 폐쇄자막방송, 3% 한국수어방송, 5% 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정하고 있음 ○ 고시의무사업자가 아닌 경우 실제 장애인방송 편성시간 보고 의무가 없으므로 관련 데이터 확보가 어렵고, 고시의무사업자가 아닌 경우 장애인방송 편성 비율이 현저하게 낮거나 거의 없다는 업계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근거하여, – 본 보고서에서는 고시의무사업자 미지정 시 장애인방송 편성 시간을 0으로 가정. 즉, 고시의무사업자 지정에 따른 장애인방송 추가 제작 시간은 의무편성시간과 동일한 것으로 계산		

◆ 개정안으로 인한 고시의무사업자 변경

- 최근 3년(2022년~2024년) 방송사업매출과 시청점유율을 적용, 현재 고시와 개정 고시에 따른 [2027년~2028년도 고시의무사업자]의 장애인 방송 의무편성을 비교
 - ※ 고시의무사업자는 2020년부터 3년 단위로 지정·공표됨에 따라 [2026년~2028년]도 의무사업자가 이미 지정·공표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장애인방송을 제공하고 있음. 제5조 개정 시, 개정 기준에 따라 고시의무사업자의 추가 및 해제가 가능하며, 3년 단위의 지정기간의 잔여 기간인 2027년, 2028년에 적용할 예정.
 - ※ 즉 개정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나, 제5조의 적용은 2027년~2028년 2년 동안의 기간임(해당 고시 개정안이 2026년도에 시행되더라도, 제5조의 적용은 2027년 1월 ~ 2028년 12월까지 적용할 예정이므로, 2026년도의 비용은 0원으로 산정)
- 고시 개정으로 인해 추가 지정되는 사업자는 SO의 경우, SKB 계열, HCN 계열, KCTV 제주방송으로 총 3개 법인(32개 사업자)이며, PP의 경우 (주)IHQ, (주)티캐스트 2개 법인임(별표 1-1)

◆ 직접비용 산출

- (산식) 개정안으로 인한 장애인방송 제작비용 증감분은 각 장애인방송 유형별 제작시간 증감분과 평균제작단가를 곱하여 산출
 - 본 개정안으로 인해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해제)될 경우, 추가(감소)되는 장애인방송 제작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음
$$\text{장애인방송 제작비용} = \text{의무편성 시간} \times \text{장애인방송 시간당 제작단가}$$
- 장애인방송 제작단가 추정
 - 최근 4년(2022~2025년) 연평균 장애인방송 제작단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각각의 감소율은 폐쇄자막방송 -13.19%, 한국수어방송 -1.76%, 화면해설방송 -0.66%(별표 1-2)
 - ※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장애인방송물 평균 제작단가 기준이며, 폐쇄자막방송의 경우, 단가 경쟁 심화로 인해 가격 하락폭이 비교적 높음
 - 그러나, 향후 장애인방송 제작 단가 변화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2027~2028년 장애인방송 제작단가에 대해 2025년 단가[최신자료] 적용
- 의무편성에 따른 장애인방송 제작시간
 - 고시의무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편성은 본방시간과 재방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 - 재방송은 이미 제작된 프로그램을 방영하므로 추가적인 장애인방송 제작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나 본방은 장애인방송 제작비용이 소요되므로, 의무편성비율은 본방과 재방 모두에서 비례적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사업자별 장애인방송 제작시간을 추정 - 재방송은 이미 제작된 프로그램을 방영하므로 추가적인 장애인방송 제작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나, 본방은 장애인방송 제작비용이 소요되므로, 본방시간 중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에 해당하는 시간을 장애인방송 제작시간으로 간주 ○ SO의 장애인방송 실질 제작시간 추정 - 본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SO와 PP로 구분되며, SO 법인 중, 여러 사업자로 구성된 법인을 MSO(Multiple System Operator)라고 함 - MSO는 동일 법인 내 전체 사업자의 3년 평균 방송매출액이 150억 이상일 경우 고시의무사업자가되며, 해당 법인 내에서 매출액이 150억 이하인 사업자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가 발생함 - 동일 법인 내 사업자 간 편성 프로그램의 유사성이 높아 동일 법인 내 사업자들은 장애인방송 제작 중복지출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HCN 서초방송이 제작한 본방 장애인방송이 HCN 충북방송에서도 편성될 경우, 두 사업자 모두 본방 장애인방송을 편성한 것으로 인정되나, 장애인방송 제작비용은 HCN 서초방송에서만 지출됨 ※ 현재 MSO 중 LG헬로비전과 딜라이브가 고시지정사업자이며, LG헬로비전은 약 90%, 딜라이브는 약 95%의 프로그램을 법인 내 사업자간 공통으로 편성하고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MSO 내에서는 장애인방송 제작에 따른 중복지출이 없다고 가정 - 이에 따라, MSO(HCN 계열, SKB 계열)의 장애인방송 제작시간은 법인별로 추정하며, 해당 법인 내 최대 의무편성 시간 사업자를 기준으로 산정 - 본방시간 및 본방비율은 매년 유사하므로, 2027~2028년도의 장애인방송 의무편성시간은 2024년도와 같다고 가정(별표 1-1) ○ PP의 장애인방송 실질 제작시간 추정 - PP의 경우, 3년 평균 방송매출액이 150억 이상이며 최근 3년 평균 시청점유율이 0.3% 이상인 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한정
--	--

- 따라서, PP의 장애인방송 제작시간은 채널단위로 추정
- SO와 마찬가지로, 본방시간 및 본방비율은 매년 유사하므로, 2027~2028년도의 장애인방송 의무편성시간은 2024년도와 같다고 가정(별표 1-1)
- o 연도별 비용편익효과 추정
 - [별표 1-1]의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시간과 [별표 1-2]의 장애인방송 2025년 최신 평균 제작단가를 곱하여 연도별 추가 비용 추정(별표 1-4)

[별표 1-1] 개정안 적용으로 추가되는 고시의무사업자의 연간 본방시간 및 본방기준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시간 추정치(2024년 기준)

구분	사업자명/채널명	연간 방송시간	본방 비율	연간 본방시간	연간 본방시간 기준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시간		
					자막	수어	화면 해설
SO	KT HCN (KEY Operator)	525,600	27.4%	144,014	100,810	5,761	10,081
	KT HCN 서초방송	525,600	27.4%	144,014	100,810	5,761	10,081
	KT HCN 동작방송	525,600	27.4%	144,014	100,810	5,761	10,081
	KT HCN 충북방송	525,600	30.0%	157,680	110,376	6,307	11,038
	KT HCN 금호방송	481,800	27.2%	131,050	91,735	5,242	9,173
	KT HCN 새로넷방송	476,010	27.5%	130,903	91,632	5,236	9,163
	KT HCN 경북방송	479,780	27.6%	132,419	92,693	5,297	9,269
	KT HCN 부산방송	503,700	28.2%	142,043	99,430	5,682	9,943
	KT HCN(8 개사)		최대값		110,376	6,307	11,038
	에스케이비수원방송	458,520	22.6%	103,626	72,538	4,145	7,254
	에스케이비기남방송	458,640	23.2%	106,404	74,483	4,256	7,448
	에스케이비한빛방송	458,640	22.9%	105,029	73,520	4,201	7,352
	에스케이비 ABC 방송	458,640	23.2%	106,404	74,483	4,256	7,448
	에스케이비중부방송	458,670	21.2%	97,238	68,067	3,890	6,807
	에스케이비세종방송	458,880	21.3%	97,741	68,419	3,910	6,842
	에스케이비전주방송	458,520	21.8%	99,957	69,970	3,998	6,997
	에스케이비종로중구방송	458,640	22.0%	100,901	70,631	4,036	7,063
	에스케이비서대문방송	458,640	22.0%	100,901	70,631	4,036	7,063
	에스케이비강서방송	458,640	22.0%	100,901	70,631	4,036	7,063
	에스케이비도봉강북방송	458,640	21.9%	100,442	70,310	4,018	7,031
	에스케이비동대문방송	458,640	22.0%	100,901	70,631	4,036	7,063
	에스케이비노원방송	458,640	21.9%	100,442	70,310	4,018	7,031
	에스케이비광진성동방송	458,640	21.9%	100,442	70,310	4,018	7,031
	에스케이비새롬방송	458,520	22.1%	101,333	70,933	4,053	7,093
	에스케이비남동방송	458,520	22.1%	101,333	70,933	4,053	7,093
	에스케이비서해방송	458,520	22.1%	101,333	70,933	4,053	7,093
	에스케이비대구방송	458,550	22.5%	103,174	72,222	4,127	7,222
	에스케이비대경방송	458,550	22.5%	103,174	72,222	4,127	7,222
	에스케이비티씨엔방송	458,550	22.5%	103,174	72,222	4,127	7,222
	에스케이비낙동방송	458,520	21.1%	96,748	67,723	3,870	6,772
	에스케이비서부산방송	458,520	21.1%	96,748	67,723	3,870	6,772
	에스케이비동남방송	458,520	21.1%	96,748	67,723	3,870	6,772
	에스케이비(23 개사)		최대값		74,483	4,256	7,448
	KCTV 제주방송	525,600	31.9%	167,666	117,366	6,707	11,737
	SO 총계(HCN, 에스케이비는 최대값 사용)				302,225	17,270	30,223
PP	스크린(Screen)	525,600	12.9%	67,802	47,462	2,034	3,390
	뷰(View)	525,600	10.3%	54,137	37,896	1,624	2,707

	드라마큐브	525,600	15.5%	81,468	57,028	2,444	4,073
	DRAMAX	525,600	38.9%	204,458	143,121	6,134	10,223
	PP 총계				285,507	12,236	20,393
	총계				587,732	29,506	50,616

출처: 시청자미디어재단

[별표 1-2] 최근 4년간 장애인방송물 분당 평균 제작단가 추이(‘22~’25년)

구분	2022년 단가	2023년 단가	2024년 단가	2025년 단가	평균증감율
폐쇄자막방송	1,765	1,446	1,236	1,150	-13.19%
한국수어방송	3,761	3,633	3,608	3,565	-1.76%
화면해설방송	10,879	10,709	10,703	10,666	-0.66%

출처: 시청자미디어재단

[별표 1-3]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단가 산정방식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단가 =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총계¹⁾ ÷ 장애인방송
편성시간 총계²⁾

1) 개별사업자 장애인방송 제작비(본방송 기준) 총계

2) 개별사업자 장애인방송 편성시간(본방송 기준) 총계

※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사업 참여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유형별 제작비
및 장애인방송 편성시간(본방송 기준) 적용

[별표 1-4] 개정안에 따른 장애인 방송물 제작 비용 증가 추정액
(’27~’28년)

단위: 천원

연도	폐쇄자막방송	한국수어방송	화면해설방송	연간 총비용	현재가치
2027	675,892	105,189	539,870	1,320,951	1,264,068
2028	675,892	105,189	539,870	1,320,951	1,209,634

◇ 검토의견 반영여부 비교표(부처작성)

내 용	반영 여부	미반영사유
[1] 규제비용 측면에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가 발생하는 방미통위 고시 대상 사업자 기준 변경으로	반영	

내 용	반영 여부	미반영사유
인한 장애인방송 제작비 증가'로 표현 수정 요청		
[2] 규제편익 측면에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가 발생하는 방미통위 고시 대상 사업자 기준 변경으로 인한 장애인방송 제작비 감소'로 표현 수정 요청	반영	
[3] 고시의무사업자 기준 변경으로 인한 직접비용 산출과 직접편익 산출 세부내용 및 결과 내용은 삭제	반영	
[4] 근거설명 상단 '고시의무사업자 미지정 시 장애인방송 편성 시간을 0으로 가정'한 부분(25쪽 상단)과 개요 부분(26쪽 하단)을 이어지도록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반영	
[5] 고시 시행 예정 시점에 따라 2026년 장애인 방송물 제작비용 증감을 재추정하고, 고시 재검토 기한(2028년 12월 31일)을 고려해 비용 추정 기간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 및 설명 요청	반영	
[6] [별표 1]에서 SO의 총계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SO 총계 (HCN, 에스케이비 최대값과 KCTV 제주방송)'와 같이 수정 권고함.	반영	
[7]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제시 된 사업자의 방송 시간 자료에	반영	

내 용	반영 여부	미반영사유
대한 출처 기재 요청함.		
[8] [별표 3]에서 장애인방송물 평균 제작단가가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단가가 낮아지는 원인을 서술하고 현재와 같이 적용하거나, 향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2026~2028년에 대해 2025년 단가 적용을 권고.	반영	

☐ 직접편익

(정량)영향집단명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		
활동제 목	장애인방송 편성의무가 발생하는 방미통위 고시 대상 사업자 기준 변경으로 인한 장애인방송 제작비 감소		
편익항목	장애인방송 제작비용 감소		
편익	연도	편익	편익(현재가치)
	2026	0	0
	2027	1,093,283,551	1046204355
	2028	1,093,283,551	1001152493
	합계	2,186,567,102	2,047,356,848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연도	산식 설명	산식
	2026	근거설명 참고	0
	2027	근거설명 참고	1093283551
	2028	근거설명 참고	1093283551
근거설명	◆ 개요 ○ 직접비용 부분 참고 ○ 고시 개정으로 지정 해제되는 사업자는 SO의 경우 (주)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1개 법인이며, PP의 경우 (주)매일방송 1개 법인임(별표 2-1) ◆ 장애인 방송 제작비 감소로 인한 편익 □ 산식		

○ 직접비용 부분 참고

□ 직접편익 산출 세부내용 및 결과

○ 장애인방송 제작단가 추정

– 직접비용 부분 및 [별표 1-2] 참고

○ 의무편성에 따른 장애인방송 제작시간

– 직접비용 부분 및 [별표 2-1] 참고

○ SO의 장애인방송 실질 제작시간 추정

– 직접비용 부분 및 [별표 2-1] 참고

○ PP의 장애인방송 실질 제작시간 추정

– 직접비용 부분 및 [별표 2-1] 참고

○ 연도별 비용편익효과 추정

– [별표 2-1]의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시간과 [별표 1-2]의 장애인방송
2025년 최신 평균 제작단가를 곱하여 연도별 비용편익효과 추정
([별표 2-2])

[별표 2-1] 개정안 적용으로 지정 해제되는 사업자의 연간 본방시간 및
본방기준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시간 추정치(2024년 기준)

구분	사업자명/채널명	연간 방송시간	본방 비율	연간 본방시간	연간 본방시간 기준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시간		
					자막	수어	화면해설
SO	한국케이블 TV 푸른방송	525,600	9.9%	52,034	36,424	2,081	3,642
PP	KBS Story	525,600	19.8%	104,069	72,848	3,122	5,203
	SBS GOLF	525,600	19.2%	100,915	70,641	3,027	5,046
	SBS LIFE	525,600	8.5%	44,676	31,273	1,340	2,234
	엠비엔플러스	426,684	15.3%	65,283	45,698	1,958	3,264
	MPLEX	525,600	21.4%	112,478	78,735	3,374	5,624
	tvN Sports	525,600	39.9%	209,714	146,800	6,291	10,486
	OLIFE	525,600	11.1%	58,342	40,839	1,750	2,917
	PP 총계				486,834	20,862	34,774
총계				523,258	22,943	38,416	

[별표 2-2] 개정안에 따른 장애인 방송물 제작 비용 감소 추정액
(`27~`28년)

단위: 천원

연도	폐쇄자막방송	한국수어방송	화면해설방송	연간 총비용	현재가치
2027	601,747	81,792	409,745	1,093,284	1,046,204
2028	601,747	81,792	409,745	1,093,284	1,001,152

※ 고시의무사업자는 2020년부터 3년 단위로 지정·공표됨에 따라 [2026년~2028년]도 의무사업자가 이미 지정·공표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장애인방송을 제공하고 있음. 제5조 개정 시, 개정 기준에 따라 고시의무사업자의 추가 및 해제가 가능하며, 3년 단위의 지정기간의 잔여 기간인 2027년~ 2028년에 적용*할 예정* * 2027년~2028년 고시의무사업자의 지정·공표는 2026년 10월 예정(고시 제5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 방송 편성실적 기산일로 60일 전까지 고시의무사업자를 지정·공표하여야함) 단, 고시 개정이 2026년 10월이전 완료되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함

※ 즉 개정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나, 제5조의 적용은 2027년~2028년 2년 동안의 기간임(해당 고시 개정안이 2026년도에 시행되더라도, 제5조의 적용은 2027년 1월 ~ 2028년 12월까지 적용할 예정이므로, 2026년도의 편익은 0원으로 산정.)

(정성)영향집단명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
활동제목	규제 예측 가능성 증가로 인한 편익
편익항목	규제 예측 가능성 증가로 인한 안정적 경영확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현재 고시 기준 고시의무사업자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 고시의무사업자(SO·PP) 지정기준 > — ① 전년도 송출실적이 있는 사업자 ② 장애인방송 제작비* 비중($\frac{\text{장애인방송물 제작비}}{\text{방송사업매출액}}$)이 1% 이하인 사업자 *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단가 × 장애인방송 편성시간 ☞ 장애인방송 편성시간 = 연간방송시간 × 본방비율 × 장애인방송 목표비율 ③ 전년도 연평균 시청점유율 0.2% 이상 채널 운영 사업자(PP에 한함) ※ SO: 지정기준 ①·② 적용, PP: 지정기준 ①·②·③ 적용 — ‘장애인방송물 평균 제작단가’는 전체 방송사가 아닌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사업에 참여한 일부를 대상으로 산정한 추정치로 실제 시장단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또한, 현재 산정기준은 복잡하고 이해가 어려워 방송사가 고시의무사업자 지정 여부를 예측하기에 곤란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시각·청각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
활동제목	시각·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방송접근권 격차 해소
편익항목	사회적 약자 보호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시각·청각장애인 등 방송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양질의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관련 법령 〉 ▪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4조(한국수어·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 프로그램의 범위) － 현재 지정기준은 본방송 비율이 높을수록 고시의무사업자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모순이 있어, 장애인방송이 재방송 위주로 편중될 우려가 있음 － 반면, 개정안은 지정기준을 ‘방송매출액’으로 일원화하여 본방송 제작 여력이 있는 사업자를 포섭하고 규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 장애인 시청자의 신규·인기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 시청 편익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됨